

2026

소방공무원 공채/경채 고득점 소방관계법규1

엠북 소방

공부혁명!
mbook.kr

- ◆ PDF 전자책
- ◆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별표 종합정리
- ◆ 최근 법령 개정 반영, 기출 지문 포함
- ◆ 3시간 4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
도서명 : 고득점 소방관계법규1

ISBN : 979-11-7393-112-3

발간일 : 2026-01-20

형식 :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18,500원



고득점 소방관계법규1

[목차]

제1편 소방기본법(p3)

제2편 화재조사법(p41)

제3편 소방시설공사업법(p56)

제4편 화재예방법(p110~167)

[비고]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초록색은 최근(1~2년내) 개정된 내용

하늘색은 소방공무원, 소방자격증 시험 기출 문제

붉은색은 소방공무원, 소방자격증 시험 빈출(2~3회 이상) 문제

노란색 형광펜은 중요

하늘색 형광펜은 중요도 상

초록색, 회색 형광펜은 중요도 최상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편 소방기본법

[목차]

제1장 총칙(p4)

제2장 소방장비 등(p11)

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(p18)

제4장 소방활동 등(p18)

제5장 화재의 조사(p30)

제6장 구조 및 구급(p30)

제7장 의용소방대(p30)

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 등(p31)

제8장 한국소방안전원(p32)

제9장 보칙(p34)

제10장 벌칙(p39)

[약어]

- 부령은 행정안전부령
- 청장은 소방청장
- 시도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
- 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- 소방관서는 소방청, 소방본부, 소방서
- 관서장은 소방관서장(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)
- 대원은 소방대원
- 소방차는 소방자동차
- 안전원은 한국소방안전원
- 원장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장
- 대상물은 소방대상물 또는 대상물
- 위급상황은 화재, 재난/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
-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

1. 목적

- (풍수해가 아니라) 화재 예방/경계, 진압
- 위급상황시 구조/구급
- 국민 생명/신체, 재산 보호
- 공공 안녕, 질서 유지, 복리증진

2. 정의

가. 소방대상물

- 건축물, 차량
- 항구에 매어둔 선박, 선박 건조 구조물
- 산림, 인공구조물, 물건
- 단, 항해중인 선박 제외

나. 관계지역

-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이웃 지역
- 화재 예방/경계/진압, 구조/구급 필요

다. 관계인

- 대상물 소유자/관리자, 점유자
- 단, 감리자, 점유예정자 제외

라. 소방본부장(이하 본부장)

- 시도 화재 예방/경계/진압/조사, 구조/구급 담당 부서 장

마. 소방대

- 화재 진압, 위급상황시 구조/구급
- 소방공무원, 의무소방원, 의용소방대원

바. 소방대장(이하 대장)

- 본부장, 소방서장(이하 서장) 등 위급상황 발생 현장에서 소방대 지휘

3. 국가/지자체의 책무

-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/신체, 재산 보호 시책 수립/시행

4. 소방기관의 설치 등

가) 시도 소방기관

- 대통령령(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)으로 정함

나) 본부장/서장은 소재지 시도지사가 지휘/감독

- 청장은 필요시 지휘/감독 가능

다) 시도 소방업무 위해 시도지사 직속 소방본부 둠

- 소방업무는

- 화재 예방/경계/진압/조사

- 소방안전교육/홍보

- 위급상황 구조/구급

5. 소방공무원 배치

- 제주도 포함, 시도 소방기관과 소방본부에 지방국가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'지자체 소방공무원 정원 규정'에 따라 소방공무원 둘 수 있다

6. 119종합상황실(이하 상황실)

- 설치/운영 기준은 부령

가. 설치

1) 관서장은 설치/운영 의무

- a) 구조/구급 필요 위급상황시,
-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,
- 정보 수집/분석, 판단/전파, 상황관리, 현장 지휘, 조정/통제
- b) 소방청, 시도 본부, 소방서에 각각 설치/운영
- c) ('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'이 아니라) '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'에 의한 전산/통신요원 배치, 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 구비
- d) 24시간 운영

2) 소방본부(이하 본부) 상황실에 경찰 둘 수 있다

3) 설치/운영은 (대통령령이 아니라) 부령

나. 실장

1) 상황실 근무자 중 최고직위

- 최고직위가 2인이상이면 선임자

2) 업무

- 재난 신고접수
- 인력/장비요청 등 사고수습
- 출동지령, 지원요청
- 재난상황 전파/보고
- 현장지휘, 피해파악
- 수습 정보수집/제공

다. 상황 보고 (대상)

- 소방서는 본부, 본부는 소방청 상황실에 **지체없이** 서면, 팩스, 컴퓨터통신 등 **보고**

1) 다음 화재

- 사망 5, 사상 10, 이재민 100인 이상

- 재산피해 50억 이상

- 관공서, 학교, 정부미도정공장, 문화재, 지하철, 지하구

- 관광호텔, 11층 이상, 지하상가, 시장, 백화점, 15,000 제곱미터 이상 공장, 화재예방강화지구

-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 제조, 저장, 취급소

- **5층 이상 또는** 객실(병상) 30실(30개) 이상 숙박시설, **병원**, 요양소

- 철도차량, 항구에 매어둔 1천톤 이상 선박, 항공기, 발전소, 변전소, 가스/화약 폭발

- 다중이용업소

2) 통제단장의 현장지휘 필요

3) 언론 보도

4) 청장이 정하는 상황

7. 소방정보통신망

- 청장/시도지사는 상황실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축/운영 가능

- 회선 이중화 가능

- 이중화된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제공 요

8. 소방기술민원센터

- 가) 청장/본부장이 (소방서가 아니라) 소방청/본부에 각각 설치/운영

- 센터장 포함 18명내

나) (기술민원) 업무

- 민원 종합 접수/**처리**
- . 소방시설, 소방공사, 위험물 안전관리 **법령해석** 등
- 질의회신집/해설서 발간
- 정보시스템 운영/관리
- 현장확인
- 청장/본부장 지시 업무

다) (센터장이 아니라) 청장/본부장은 관계기관장에 공무원/직원 파견 요청

라) 이외는 소방청에 설치시 청장, 본부에 설치시 시도 규칙으로 정함

9.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

- 소방 역사와 안전문화 발전,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**청장은 소방박물관,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** 설립/운영 가능

가. 소방박물관

- 필요한 사항은 **부령**으로 정함
- 관장/부관장 각 1인
- . 관장은 소방공무원중 청장이 임명
- 국내외 역사, 복장/장비 등 수집/전시
- 7인내 운영위 둠

나. 소방체험관

- 1)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 체험
- 2) 필요한 사항은 부령 기준에 따라 시도 **조례**로 정함
- 3) 기능
 - 재난/사고 예방/대응 교육

- 교육 프로그램 개발, 홍보/전시
- 교육인력 양성, 유관기관/단체 협력
- 시도지사 인정 사업 수행

10.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종합계획)

가. 종합계획

- 1) **성장**은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/신체, 재산 보호를 위해 5년마다 수립/시행, 재원 확보 노력 의무
 -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거쳐 10월31일까지 수립
 - 중앙행정기관장, 시도지사에 통보

2) 내용

- 서비스 질 향상
- 업무 체계 구축, 기술 연구/개발/보급
- 장비 구비
- 전문인력 양성
- 업무 기반조성
- (소방차 우선통행 등)교육/홍보
- 재난/재해 대응체계
- 장애인, 노인, 임산부, 영유아, 어린이 등 이동 어려운 자 대상 조치

나. 세부계획

1) 제출

- (시군구가 아니라) **시도지사는**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매년 종합계획 시행 **세부계획을**

12월31일까지 수립해 청장에 제출

- 청장은 보완/수정 요청

2) 평가(24년 11월 신설)

a) 청장은

- 수립의 적절성, 추진실적 등 정기 평가 가능
- **11월 30일까지** 시도지사에 평가계획 통지
- b) 시도지사는 **1월 31일까지** 청장에 추진실적 등 제출
- c) 청장은 **3월 31일까지** 시도지사에 평가결과 통보
- d) 이외 청장이 정함

11. 소방의 날 등

가) **11월 9일** 소방의 날

- 안전의식과 화재 경각심 제고, 안전문화 정착
- 청장/시도지사가 따로 행사 가능

나) 명예 대원

- 청장은 천재지변시 등 구조행위 한 의사상자나 소방발전 공로자 위촉 가능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틱(mbook.kr)

제2장 소방장비 등

8~11조

1. 소방력

- 소방기관의 소방업무 수행 **인력/장비**

- **기준은 부령**(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)

- **시도지사는 기준에 따라 소방력 확충 계획 수립/시행 요**

- 소방차 등 **소방장비 분류, 표준화, 관리는 따로 법률**(소방장비관리법)로 정함

- 소방활동장비/설비의 규격/종류는 부령

2. 국고보조

가. 국가는 소방장비 구입 등 시도 소방업무 경비 일부 보조

- **보조 대상사업 범위**, 기준보조율은 **대통령령**

- **기준보조율**은 보조금법 시행령 따름

1) 다음 구입/설치

- **소방차**

- **소방헬리콥터, 소방정**

- **소방전용통신설비, 전산설비**

- 방화복 등 장비

- 단, 전기/기계설비, 소방용수시설, 사무용집기 제외

2) 소방관서용 청사 건축

나. 국고보조 대상 소방활동장비와 설비 종류/규격(부령)

1) 소방자동차

a) 펌프차

- 대형 240, 중형 170, 소형 120 마력 이상

b) 물탱크 소방차

- 대형 240, 중형 170마력 이상

c) 화학소방차

- 비활성가스 이용

- 고성능/내폭은 340마력 이상

- 일반은 대형 240, 중형 170마력 이상

d) 사다리 소방차

- 고가(사다리 33m 이상) 330마력 이상

- 굴절 27m 이상급 330마력 이상, 18m 이상급 240마력 이상

e) 조명차: 중형 170마력

f) 배연차중형: 170마력 이상

g) 구조차

- 대형 240마력, 중형 170마력 이상

h) 구급차

- 특수 90마력, 일반 85마력 이상

2) 소방정 100톤 이상급, 50톤급

- 구조정 30톤급

3) 소방헬리콥터 5~17인승

4) 기준가격

- 국내조달품은 정부고시가격

- 수입물품은 조달청 조사 해외 시가

- 고시가격, 해외 시가 없으면 둘 이상 조사기관 가격 평균

3. 소방용수시설

가. 시도지사

- 소방용수시설(소화전, 급수탑, 저수조) 설치, 유지, 관리
-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초기 대응 필요 지역 중 화재경계지구나 시도지사 인정 지역에 (소방호스,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해 화재를 진압하는)

비상소화장치 설치 가능

나. 일반수도사업자

- 서장과 협의 후 소화전 설치
- 서장에 설치 통지, 소화전 유지/관리

다. 설치기준

1) 소방용수표지

- (청장이 아니라) 시도지사가 설치

a) 지하 소화전/저수조

- 맨홀 뚜껑 지름 648mm 이상
- 예외) 승하강식 소화전
- 맨홀 뚜껑에 '소화전 또는 저수조 주정차금지' 표시
- 맨홀 뚜껑 부근에 폭 15cm 노란색 반사도료 선

b) 지상 소화전, 저수조, 급수탑

- 안쪽 문자는 흰색,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, 안쪽 바탕은 붉은색,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 반사재료

c)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하면 규격 달리 할 수 있다

2) 소방용수시설

a) 공통

- 대상물과 수평거리 140, 주거/상업/공업 지역은 100m 이하

b) 소화전

- 상수도와 연결

- 지하식이나 지상식

- 소방호스 연결금속구 구경 65mm(65mm 이상 아님)

c) 급수탑

- 배관 구경 100mm 이상

- 개폐밸브는 지상 1.5~1.7m에 설치

d) 저수조

- 지면에서 낙차 4.5m 이하

- 흡수부분 수심 0.5m 이상

- 소방펌프차 쉽게 접근

- 토사/쓰레기 제거 설비

- 흡수관 투입구는 사각형은 한 변, 원형은 지름 60cm 이상

- 상수도에 연결해 자동 급수

3) 비상소화장치: 청장이 세부사항 정함

a) 비상소화장치함

- 청장 고시 성능인증/제품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 설치